



제1551호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훈 령 제 3 7 8 호 남동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 2

공 고

- 공 고 제 1 5 0 5 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7
- 공 고 제 1 5 0 6 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18
- 공 고 제 1 5 1 0 호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4
- 공 고 제 1 5 1 3 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
- 공 고 제 1 5 1 6 호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결정 공시 62
- 공 고 제 1 5 3 3 호 민원 처리 결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63
- 공 고 제 1 5 3 8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64
- 공 고 제 1 5 4 2 호 새말소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 66
- 공 고 제 1 5 4 5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공고·열람(정정) 68
- 공 고 제 1 5 4 7 호 고잔동 372-2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소로1-7호선)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76
- 보 건 소 공 고 제 6 9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80

고 시

- 고 시 제 1 2 3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81
- 고 시 제 1 2 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775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83

회 람								
----------------	--	--	--	--	--	--	--	--

훈 령

남동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7월 30일

남동구 훈령 제378호

남동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남동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남동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제1항에 따라 남동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운영 및 참여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
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인천남동소방서장
4. 인천공단소방서장
5. 인천남동경찰서장
6. 인천논현경찰서장
7. 재난안전 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인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협의회는 총회는 안전문화 활동 추진에 있어서 활동의 필요가 있는 경우나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제7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협의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의견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며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

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이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는 이 훈령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이 필요하고
- 또한, 안전문화 민·관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활동사항과 운영체계를 명시를 통한 범 구민 안전문화운동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등 (제3조 ~ 제5조)
 - 위원장 : 공동위원장 2명(구청장, 위촉직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 구 성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 구 재난 및 안전 총괄 업무 담당국장,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남동소방서장, 인천공단소방서장, 인천남동경찰서장, 인천논현경찰서장
 - 재난안전 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장
 -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임 기 :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
- 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 제9조)
 - 회의개최 : 안전문화 활동 추진에 있어 활동의 필요가 있는 경우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최
 - 정 족 수 :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505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2017. 3. 18. 화재로 소실된 소래포구 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어시장을 관리하고, 운영의 합리적인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어시장’의 정의(안 제2조)
 - “소래포구 어시장”(이하 “어시장”)이란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상에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어진 건축물 및 영조물을 말한다.
 - 어시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어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어시장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어시장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 어시장의 사용·수익허가로 인한 사용료 및 납부(안 제6조)

- 사용·수익허가로 징수되는 연간 사용료의 징수 금액 및 납부 절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공영개발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7층 공영개발과

☎ 453-8505, FAX 453-56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5. 제정조례(안) : 별첨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0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17. 3. 18. 화재로 소실된 소래포구 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어시장을 관리하고 운영의 합리적인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어시장’의 정의 : (안 제2조)
- 어시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어시장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및 제23조(규칙)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래포구 어시장”(이하 “어시장”이라 한다)이란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상에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어진 건축물 및 영조물을 말한다.
2. “점포”란 어시장의 일부로서 수산물 판매업소 및 매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로부터 점포 및 편의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편의시설”이란 상권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어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시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점포, 편의시설 및 건물의 유지·관리

에 필요한 그 밖의 시설로 구성된 어시장을 설치·운영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① 어시장 내 점포 또는 편의시설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납부) ① 제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로 인하여 징수되는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입찰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낙찰된 금액
2.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요율로 계산한 금액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를 따른다.

③ 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지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납부한다.

제7조(공용 필요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시설 파손방지 등을 위한 노력) ① 제5조에 따른 사용자는 어시장 내 시설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시설이 파손되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결과의 비치) 구청장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어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실 내에 갖추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아. (생략)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카.

2.~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506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소래포구 어시장(이하 “어시장”) 운영의 합리적인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어시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어시장의 사용·수익허가 신청 규정(안 제2조)
 - 어시장 사용 및 수익허가에 관한 절차 및 사항
 - 어시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규정(안 제4조)
 - 어시장 시설 사용료의 종류 및 부과, 산출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공영개발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7층 공영개발과
☎ 453-8505, FAX 453-56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5. 제정조례 시행규칙(안) : 별첨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소래포구 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어시장의 사용·수익허가 신청 규정 : (안 제2조)
- 어시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규정 : (안 제4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및 제23조(규칙)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수익허가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기간 중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 ①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신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는 조례 제6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② 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전기료
2. 수도료
3. 가스료

4. 산소료
 5. 해수사용료 등
- ③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분뇨 처리 수수료
 7. 폐기물 처리 수수료
 8.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
- ④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부과한다.
- ⑤ 부과금은 개별 점포 및 편의시설의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산출한다.
- ⑥ 관리비는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산출한다.
- ⑦ 부과금과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구청장과 사용자 대표의 협의로 결정한다.
- ⑧ 구청장은 고지서를 납기일 7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발송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유재산 사용 · 수익허가 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⑤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면적 (㎡)	대부기간	용 도 (사 용 목 적)	사용·수익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수익허가서(제3조제2항 관련)

재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68

소래포구 어시장 건물 층 _m²

신청인 주소 :

성명 :

20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 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 기
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와 관련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
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의 사용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잔여 미
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본
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그 증서를 본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등)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부과금 및 관리비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 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본 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한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협의) 쌍방 간의 협의로 본 허가조건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자택		
			점포		
			휴대폰		
	주 소				
사용·수익 허가내역	시설번호(상호)				
	면적(m ²)				
	연사용료(원)				
변경사항	변경 전	(주소, 사용자)			
	변경 후	(주소, 사용자)			
휴업또는폐업 (해당사항 ○ 표시)	기 간				
	사 유				
해지사유	영업부진(), 건강(), 전업(), 기 타()				

상기 신청인은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수익허가 변경 및 해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 증빙서류 각 1부

남동구청장 귀하

[참고자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아. (생략)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카.

2.~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①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0-1510호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의 규정에 따라 폐업사실이 확인되어 직권말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상당 기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내용 참조
3. 공고기간: 2020. 7. 23.(목) ~ 2020. 8. 12.(수) (21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2020. 8. 13.(목)
5. 직권말소 예고 대상 업소

대표자	업소명 (업종)	업소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원인	직권말소 예정일
유 * 일	뽕방뽕방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47-2, 101호 (구월동)	직권말소	영업폐지일부터 7일 내 폐업신고 미 이행	2020. 8. 13.(목)
장 * 현	존앤존 PC방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인천 남동구 구월로 350, 2층 (만수동)			
이 * 선	잭팟 PC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522번길 52, 1층 (구월동)			

6.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7. 유의사항

- ① 당사자(대표자)께서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남동구청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032-453-2139)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② 만일 공고 기간 내 의견서 제출 및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제출기한: 2020. 8. 12.(수) 18:00까지
- 문의사항: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유통팀 (☎032-453-6263)

2020년 7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직권말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0-1513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규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市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을 일치시키기 위함.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령 및 市 조례에 따라 용어 일치 정비(안 제2조)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시행령에 따른 권한 외 조항 삭제(안 제7조)
 -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완화 → 시·도지사의 권한(시행령 제21조)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 정비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추가(안 별표6)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의 징수방법 수정(안 별표7)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 8. 12.(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참조 : 도시경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낼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도시경관과

○ 연 락 처 : ☎ 453-2282, FAX 453-283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자료

○ 일부개정 조례안 : 별첨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0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 이유

- 상위법규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645호, 2020.4.28. 개정)」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2020.6.02.)」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용어 등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법령 및 市 조례에 따라 용어 등 일치 정비(안 제2조)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시행령에 따른 권한 외 조항 삭제 (안 제7조)
 -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완화 → 시·도지사의 권한(시행령 제21조)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 정비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추가(안 별표 6)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의 징수방법 수정(안 별표 7)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7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에서”를 “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구조안전확인서류”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9조에”를 “제9조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에”를 “제16조에도”로, “표시기간에”를 “표시기간에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2항”을 “영 제26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서”를 “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3명에서 5명”을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4항 중 “조례에”를 “조례를”로, “이를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자”를 “수탁자”로, “위탁자의”를 “수탁자의”로, “위탁자에게”를 “수탁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를 “수탁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수탁자에 대하여 공공게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을 “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공공게시시설”로, “수탁기관에”를 “수탁자에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센터”를 각각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관리자”를 “해당 광고물 등의 관리자”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에도”로 한다.

제30조제8항 중 “제7항에”를 “제7항에도”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안전점검 수탁자”를 “안전점검을 위탁 받은 자”로 한다.

제32조 후단 중 “관리수탁자”를 “수탁자”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6, 별표 7,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31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 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4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20,000원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 · 약국 표지등(개당)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5,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10,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파. 벽보(50매)	5,000원	
하. 전단(500매)	5,000원	
거. 입간판	4,000원	
너. 전자게시대(광고 1건당)	6,000원	
더.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29조 관련,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7]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31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18,000원
	- 면적 5㎡ 초과 20㎡ 이하	26,000원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18,000원
	- 면적 3.5㎡ 초과 10㎡ 이하	26,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27,000원
	- 면적 50㎡ 초과 70㎡ 이하	49,000원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18,000원
	- 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6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 제17조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하며 (단순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제21조제3항 관련)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전 화 번 호	
	영업장소재지			
종업원 수			사무실 면적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210mm×297mm 복사용지 75g/㎡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

(제21조제5항 관련)

수 탁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영업장소재지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위 탁 내 용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 49 -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심의 관련 서류”란 제1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제7조(표시방법 완화)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에 의한 표시방법을 완화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그 구역 범위 또는 표시방법의 완화내용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에 지정 고시된 지역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법 제3조제4항 및 영 제21조

② -----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

-----.

③ -----
구조안전확인서류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이 그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8조(특구에서의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특구에서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9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가. · 나. (생략)

2. 시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2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생략)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 제2항에서“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제11조(주민협의회) ① 영 제27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1. ----- 제9조에
도 -----
-----.

가. · 나. (현행과 같음)

2. ----- 제16조에도 -----

----- 표시
기간에도 -----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 제2항제7호-----

-----.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민협의회) ① -----
----- 조례로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 7. (생 략)

③ (생 략)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
성·운영) ①·② (생 략)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
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
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
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
다.

④ 삭 제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
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한 3명에서 5명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
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

----- 이하-----
-----.

3.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
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
음)

<삭 제>

⑤ -----

-- 3명 이상 5명 이하-----

-----.

-----.

⑥ -----

법·절차, 안전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⑦ (생략)

제16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

① ~ ④ (생략)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 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
요령 등) ① ~ ③ (생략)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제21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

따른다.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
요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조례를

구청

장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

탁) ① ~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 하여야 하며, 위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 되,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 략)

⑧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 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게시시설 이용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⑨ (생 략)

제22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게시대

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 수탁자-----
----- 수
탁자의 -----

----- 수탁자에게 -----

-----.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
-- 한 차례만 -----
-----.

⑦ (현행과 같음)

⑧ 수탁자-----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도·감독 등) ① -----
-- 수탁자에 대하여 공공게시시설 -----

-----.

② ----- 수탁자-----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옥외광고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 ① 사업소장, 동장(이하 이 조에서“동장 등”이라 한다)은 현수막, 벽보, 전단(이하 이 조에서“현수막 등”이라 한다)을 구에 주소를 둔 주민 및 단체(이하 조에서“주민 등”이라 한다)에서 정비·수거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 등이 제1항의 현수막 등의 정비·수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사업소에 제출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봉사단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가입 여부는

-----.

③ -----

----- 공공게시시설 -----

수탁자에게 -----
-----.

제26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 ① -----

----- 범위 -----

-----.

② -----

----- 행정복지 -----
센터 -----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사업
소 여건에 따라 결정 될 수 있
다.

③ · ④ (생 략)

제28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
용청구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
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산정하
여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
다.

제2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
한 교육) ① ~ ③ (생 략)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
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
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제30조(교육의 위탁 등) ① ~ ⑦
(생 략)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

----- 행정복지센터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
용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 광고물 등의 관리자 --

--.

제2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
한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 제3항에

도 -----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교육의 위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제7항에

도 -----

다.

제31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수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제32조(사용료)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9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가 징수한다.

--.

제31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안전점검을 위탁 받은 자-----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용료) -----

-----.

---- 수탁자-----

--.

[참고자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지역 등은 제외한다)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1.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장은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516호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20. 1. 1.
2. 결 정 내 역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3. 대 상

-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필지: 총 3필지

[단위:원/m²]

토지소재지	당초지가	조정지가	비 고
수산동 288-8	178,000	204,700	상향조정
수산동 288-14	43,000	106,800	상향조정
논현동 674	2,660,000	1,925,000	하향조정

○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

조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6152, 6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533호

공시송달 공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우리구로 이송된 민원 사항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민원 처리 결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박○○(인천 미추홀구 독정리로 ○○)
3. 공고기간 : 2020. 7. 29. ~ 2020. 8. 13.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민원 처리 결과(별도 확인)
6. 기타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 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032-453-248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538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0.7.29. ~ 2020.8.12.
3. 공고대상 : 인천83나1880외 2대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 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 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사유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 고
1	2020-00147	인천83나 1880	봉고프런티 어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59 12단지 1205동 지하주차장	황*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길 2*, **/4 일****라 *동 **1호(효*동)	2020.6.19. 2020.7.6.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2020.5.27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7077	
2	2020-00154	69로0526	아반떼 스포츠(AVA NTE SPORT)	남동구 방축로 402-1 미래모터스 뒤 골목	안*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길 2*, **4호(성*동)	2020.6.8. 2020.6.25.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2020.6.2.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032-814-4400	
3	2020-00166	58어9706	마티즈 0.8S AT	남동구 하춘서로41 인향빌라 3동 앞 도로변	강*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길 *3, **2호(송*동, 진*****트)	2020.6.25. 2020.7.13.	기타 기타	2020.6.23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032-814-440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542호

새말소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20-131호(2019.10.11.)로 사업시행 인가된 새말소공원 조성사업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9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새말소공원 조성사업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36-35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남동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7. 29. ~ 2020. 8. 12.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방문 또는 전화(☎453-6292)
7. 열람서류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새말소공원 조성사업 수용할 물건 사업시행자 조서 (토지)

일련 번호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동(리) 명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성명	공부상 주소 (송달주소)	성명	주소
			공부	실제	공부	편입					
	합계	1필지			4,232.32	4,232.32					
1	간석동	산36-35	임야	임야	4,238X30,528 /30,569	4,238X30,528/30,569	30,528/30,569	진**씨*파	인천시 계양구 ***-* (인천시계양구***-*)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545호

도시계획시설(시장: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공고·열람(정정)

남동구 공고 제2020-1503(2020.07.23.)호로 공고·열람된 도시계획시설(시장: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사업에 대하여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 종합건설본부 건축1팀(☎440-5260), 남동구청 도시재생과(☎453-2955)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7월 30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시장)
- 명칭: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3. 사업규모(변경)

- 기정: A=169,851㎡
 - 변경: A=169.853㎡
- (※ 도로 선형 변경으로 인한 사업규모 증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16.08.22. ~ 2020.08.31.
- 변경: 2016.08.22. ~ 2020.10.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7.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8. 열람 장소

- 종합건설본부(건축1팀 032-440-5260)
-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

9.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편입토지조서(변경)

일련 번호	구분	주소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비고
합 계				기정	170,688	169,851			
				변경	169,853	169,853			
1	변경없음	남촌동	121-1	전	351	351	인천광역시		
2	변경없음	남촌동	122-3	전	330	330	인천광역시		
3	변경없음	남촌동	122-4	전	495	495	인천광역시		
4	변경없음	남촌동	122-5	전	363	363	인천광역시		
5	변경없음	남촌동	122-6	전	430	430	인천광역시		
6	변경없음	남촌동	122-7	전	173	173	인천광역시		
7	변경없음	남촌동	122-8	전	324	324	인천광역시		
8	변경없음	남촌동	123	전	1,458	1,458	인천광역시		
9	변경없음	남촌동	124	전	2,050	2,050	인천광역시		
10	변경없음	남촌동	125-1	전	1,029	1,029	인천광역시		
11	변경없음	남촌동	127-3	전	3,049	3,049	인천광역시		
12	변경없음	남촌동	128-5	전	124	124	인천광역시		
13	변경없음	남촌동	128-6	전	19	19	인천광역시		
14	변경없음	남촌동	128-7	전	1	1	인천광역시		
15	변경없음	남촌동	136-1	전	605	605	인천광역시		
16	변경없음	남촌동	137-1	전	1,076	1,076	인천광역시		
17	변경없음	남촌동	138-1	전	4,079	4,079	인천광역시		
18	변경없음	남촌동	138-2	전	803	803	인천광역시		
19	변경없음	남촌동	138-3	전	347	347	인천광역시		
20	변경없음	남촌동	139	전	1,791	1,791	인천광역시		
21	변경없음	남촌동	139-1	전	1,323	1,323	인천광역시		
22	변경없음	남촌동	139-2	전	1,792	1,792	인천광역시		
23	변경없음	남촌동	140	전	324	324	인천광역시		

24	변경없음	남촌동	141-1	전	1,908	1,908	인천광역시		
25	변경없음	남촌동	142-1	전	116	116	인천광역시		
26	변경없음	남촌동	143-1	전	248	248	인천광역시		
27	변경없음	남촌동	144-5	전	1,226	1,226	인천광역시		
28	변경없음	남촌동	144-6	전	915	915	인천광역시		
29	변경없음	남촌동	144-7	전	837	837	인천광역시		
30	변경없음	남촌동	145-1	전	2,932	2,932	인천광역시		
31	변경없음	남촌동	145-2	전	2,221	2,221	인천광역시		
32	변경없음	남촌동	146-1	전	888	888	인천광역시		
33	변경없음	남촌동	147-1	전	1,015	1,015	인천광역시		
34	변경없음	남촌동	148-2	전	4	4	인천광역시		
35	변경없음	남촌동	148-3	전	540	540	인천광역시		
36	변경없음	남촌동	149	전	1,002	1,002	인천광역시		
37	변경없음	남촌동	149-5	전	629	629	인천광역시		
38	변경없음	남촌동	149-6	전	762	762	인천광역시		
39	변경없음	남촌동	149-7	전	162	162	인천광역시		
40	변경없음	남촌동	149-8	전	1,172	1,172	인천광역시		
41	변경없음	남촌동	152-5	전	1,320	1,320	인천광역시		
42	변경없음	남촌동	152-6	대	7	7	인천광역시		
43	변경없음	남촌동	153-1	전	453	453	인천광역시		
44	변경없음	남촌동	153-2	대	331	331	인천광역시		
45	변경없음	남촌동	153-8	창	200	200	인천광역시		
46	변경없음	남촌동	153-11	대	49	49	인천광역시		
47	변경없음	남촌동	153-12	대	13	13	인천광역시		
48	변경없음	남촌동	153-13	대	7	7	인천광역시		
49	변경없음	남촌동	153-14	도	20	20	인천광역시		
50	변경없음	남촌동	153-15	전	1,731	1,731	인천광역시		
51	변경없음	남촌동	154-3	전	3,751	3,751	인천광역시		
52	변경없음	남촌동	154-4	주	155	155	인천광역시		
53	변경없음	남촌동	155	전	2,779	2,779	인천광역시		
54	변경없음	남촌동	155-1	전	484	484	인천광역시		
55	변경없음	남촌동	156	전	628	628	인천광역시		

56	변경없음	남촌동	157	전	2,526	2,526	인천광역시		
57	변경없음	남촌동	158	전	1,064	1,064	인천광역시		
58	변경없음	남촌동	159	전	1,627	1,627	인천광역시		
59	변경없음	남촌동	159-1	전	490	490	인천광역시		
60	변경없음	남촌동	159-2	전	3,013	3,013	인천광역시		
61	변경없음	남촌동	160	전	3,614	3,614	인천광역시		
62	변경없음	남촌동	160-1	전	2,072	2,072	인천광역시		
63	변경없음	남촌동	161	전	3,775	3,775	인천광역시		
64	변경없음	남촌동	162	전	3,193	3,193	인천광역시		
65	변경없음	남촌동	163	전	1,544	1,544	인천광역시		
66	변경없음	남촌동	163-1	전	1,544	1,544	인천광역시		
67	변경없음	남촌동	164	전	3,094	3,094	인천광역시		
68	변경없음	남촌동	165	전	846	846	인천광역시		
69	변경없음	남촌동	166	전	1,567	1,567	인천광역시		
70	변경없음	남촌동	167	전	1,021	1,021	인천광역시		
71	변경없음	남촌동	168	전	1,223	1,223	인천광역시		
72	변경없음	남촌동	169	전	1,002	1,002	인천광역시		
73	변경없음	남촌동	169-1	전	1,487	1,487	인천광역시		
74	변경없음	남촌동	170	전	942	942	인천광역시		
75	변경없음	남촌동	171-1	전	2,034	2,034	인천광역시		
76	변경없음	남촌동	171-2	도	208	208	인천광역시		
77	변경없음	남촌동	171-3	전	367	367	인천광역시		
78	변경없음	남촌동	171-4	임	1,103	1,103	인천광역시		
79	변경없음	남촌동	171-5	도	1,460	1,460	인천광역시		
80	변경없음	남촌동	172-1	전	3,467	3,467	인천광역시		
81	변경없음	남촌동	172-2	전	1,794	1,794	인천광역시		
82	변경없음	남촌동	172-10	전	203	203	인천광역시		
83	변경없음	남촌동	172-12	전	187	187	인천광역시		
84	변경없음	남촌동	172-17	임	216	216	인천광역시		
-	기정	남촌동	172-18	임	171	171	인천광역시		
85	변경	남촌동	172-19	임	169	169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86	변경없음	남촌동	173-1	전	50	50	인천광역시		

87	변경없음	남촌동	173-2	전	2,449	2,449	인천광역시		
88	변경없음	남촌동	173-3	전	1,174	1,174	인천광역시		
-	기정	남촌동	173-5	대	316	308	인천광역시		
89	변경	남촌동	173-17	대	309	309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	기정	남촌동	173-7	전	1,075	1,074	인천광역시		
90	변경	남촌동	173-18	전	1,074	1,074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	기정	남촌동	173-16	전	1,062	1,043	인천광역시		
91	변경	남촌동	173-21	전	1,043	1,043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92	변경없음	남촌동	173-11	주	198	198	인천광역시		
93	변경없음	남촌동	173-12	전	562	562	인천광역시		
94	변경없음	남촌동	173-13	전	1,101	1,101	인천광역시		
-	기정	남촌동	173-14	전	1,078	1,077	인천광역시		
95	변경	남촌동	173-19	전	1,077	1,077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	기정	남촌동	173-15	전	2,406	2,353	인천광역시		
96	변경	남촌동	173-20	전	2,351	2,351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97	변경없음	남촌동	174-3	전	555	555	인천광역시		
98	변경없음	남촌동	175	전	1,370	1,370	인천광역시		
99	변경없음	남촌동	175-1	전	445	445	인천광역시		
100	변경없음	남촌동	176-1	전	1,970	1,970	인천광역시		
-	기정	남촌동	176-3	전	3,682	3,585	인천광역시		
101	변경	남촌동	176-9	전	3,584	3,584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102	변경없음	남촌동	176-4	전	2,330	2,330	인천광역시		
103	변경없음	남촌동	176-5	전	933	933	인천광역시		
104	변경없음	남촌동	176-8	도	1,769	1,769	인천광역시		
105	변경없음	남촌동	177-1	전	3,282	3,282	인천광역시		
106	변경없음	남촌동	177-3	전	321	321	인천광역시		
107	변경없음	남촌동	178-1	전	992	992	인천광역시		
108	변경없음	남촌동	178-2	전	727	727	인천광역시		
109	변경없음	남촌동	178-3	전	909	909	인천광역시		
110	변경없음	남촌동	179-1	전	1,000	1,000	인천광역시		
111	변경없음	남촌동	179-2	전	446	446	인천광역시		

112	변경없음	남촌동	179-3	전	726	726	인천광역시		
113	변경없음	남촌동	180	전	813	813	인천광역시		
114	변경없음	남촌동	181	전	774	774	인천광역시		
115	변경없음	남촌동	182	전	892	892	인천광역시		
116	변경없음	남촌동	183-1	전	727	727	인천광역시		
117	변경없음	남촌동	183-2	전	2,102	2,102	인천광역시		
118	변경없음	남촌동	183-3	전	1,636	1,636	인천광역시		
119	변경없음	남촌동	183-4	전	1,822	1,822	인천광역시		
120	변경없음	남촌동	183-5	전	536	536	인천광역시		
121	변경없음	남촌동	183-6	전	1,537	1,537	인천광역시		
122	변경없음	남촌동	183-7	전	661	661	인천광역시		
123	변경없음	남촌동	183-8	전	1,227	1,227	인천광역시		
124	변경없음	남촌동	184-4	전	296	296	인천광역시		
125	변경없음	남촌동	184-5	전	1,891	1,891	인천광역시		
126	변경없음	남촌동	185-10	전	3,975	3,975	인천광역시		
127	변경없음	남촌동	185-2	도	6	6	인천광역시		
128	변경없음	남촌동	185-3	전	1,474	1,474	인천광역시		
129	변경없음	남촌동	186-53	전	1,870	1,870	인천광역시		
130	변경없음	남촌동	186-54	전	1,099	1,099	인천광역시		
131	변경없음	남촌동	189-1	전	1,054	1,054	인천광역시		
132	변경없음	남촌동	190	답	2,863	2,863	인천광역시		
133	변경없음	남촌동	191-3	답	302	302	인천광역시		
134	변경없음	남촌동	193-3	전	627	627	인천광역시		
-	기정	남촌동	194-2	전	859	822	인천광역시		
135	변경	남촌동	194-3	전	822	822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	기정	남촌동	195	전	2,377	2,360	인천광역시		
136	변경	남촌동	195-2	전	2,361	2,361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	기정	남촌동	196	전	256	178	인천광역시		
137	변경	남촌동	196-2	전	177	177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	기정	남촌동	198	전	88	21	인천광역시		
138	변경	남촌동	198-7	전	25	25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	기정	남촌동	199	임	534	396	인천광역시		

139	변경	남촌동	199-7	임	398	398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	기정	남촌동	200	전	475	327	인천광역시		
140	변경	남촌동	200-3	전	326	326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	기정	남촌동	598-69	전	299	232	인천광역시		
141	변경	남촌동	598-85	전	232	232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	기정	남촌동	598-70	도	3,752	3,710	인천광역시		
142	변경	남촌동	598-87	도	3,711	3,711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143	변경없음	도림동	528-5	전	480	480	인천광역시		
-	기정	도림동	528-6	전	417	417	인천광역시		
144	변경	도림동	528-8	전	417	417	인천광역시		오기정정
145	변경없음	도림동	530-7	전	235	235	인천광역시		
146	변경없음	도림동	530-8	대	360	360	인천광역시		
147	변경없음	도림동	530-9	전	532	532	인천광역시		
-	기정	도림동	558-25	도	45	11	인천광역시		
148	변경	도림동	558-26	도	11	11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149	변경없음	도림동	561-5	전	267	267	인천광역시		
150	변경없음	도림동	561-6	도	42	42	인천광역시		
151	변경없음	도림동	561-7	도	341	341	인천광역시		
152	변경없음	도림동	562-10	도	8	8	인천광역시		
-	기정	도림동	617-51	도	335	305	인천광역시		
153	변경	도림동	617-72	도	305	305	인천광역시		지적분할
154	변경없음	도림동	617-46	도	179	179	인천광역시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1547호

**고잔동 372-2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소로1-7호선)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남동구 고시 제2019-184호(2019.12.27.)로 사업시행 인가된 고잔동 372-2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소로1-7호선)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30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고잔동 372-2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소로1-7호선)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2-26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남동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7. 30. ~ 2020. 8. 13.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남동구청 건설과 방문 또는 전화(☎453-2713)
7. 열람서류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조서(토지)

사업명 : 고잔동 372-2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소로1-7호선)

일련 번호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동(리) 명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성명	현주소	성명	주소
			공부	실제	공부	편입					
	합계				1,385						
1	고잔동	372-28	답	답	61.0	33.0		삼***업 (주)	인천시 남동구 **동 ***_**		
				도		28.0					
2	고잔동	372-57	답	답	336.0	323.0	1/2	이*업	강원도 삼척시 **면 ****로*길 *		
							1/2	신*열	경기도 수원시 **구 *****로 ***, **동 ****호 (**동, *****)	**농업 **조합	경기 연천군 **면 **로 ***
				도		13.0	1/2	이*업	강원도 삼척시 **면 ****로 *길 *		
							1/2	신*열	경기도 수원시 **구 *****로 ***, **동 ****호 (**동, *****)	**농업 **조합	경기 연천군 **면 **로 ***
3	고잔동	379-24	전	전	886.0	886.0		강*식	경기도 시흥시 **로 ***번길 **. **동 ***호 (**동, *****)	***협업 **조합	인천 남구 **로 ***
4	고잔동	372-69	전	전	101.0	101.0		이*득	인천시 남동구 *****로**번길 **_**(**동)	국(**세무 서)	인천 남동구 **로 ***
5	고잔동	372-58	답	답	1.0	1.0	1/2	이*업	강원도 삼척시 **면 ***** *길*		
							1/2	신*열	경기도 수원시 **구 *****로 ***, **동 ****호 (**동, *****)	**농업 **조합	경기 연천군 **면 **로 ***

사업시행자조서(지장물)

사업명 : 고잔동 372-2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소로1-7호선)

일련 번호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							소 유 자		관 계 인	
	동(리)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면적 수량	단위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고잔동	372-10	출입문	철재 B=3.0H=1.9	5.7	m ²		삼****업(주)	인천시 남동구 **동 ***_**		
			웬스	EGI L=5.0H=1.9	9.5	m ²					
			웬스	메쉬웬스 L=5.0H=1.8	9	m ²					
			CCTV		3	개소					
			수도계량기		1	개소					
			적외선감지기		3	개소					
			포장	55.3m ²	1	식					
2	고잔동	372-57	출입문	EGI웬스 B=8.0H=6.0	48	m ²		최*구	인천시 남동구 **동 ***_**		
			담장	EGI웬스 H=3.0L=70.0	210	m ²					
			계근대	철재[50톤 用] B=3.1L=10.0	1	개소					
			사무실	컨테이너	2	개소					
			화장실	간이화장실 정화조 없음	1	개소					
			CCTV		5	개소					
			구조물	철재, 고철분리수거대	1	식					
			컨테이너 바닥기둥	콘크리트	2	식					
			포장	272.7m ²	1	식					
			동력	전기설비 포함	1	식					

제1549호

남동구 구보

2020. 7. 16. 목요일

			사무집기		1	식					
			제품		1	식					
3	고잔동	379-24	창고	컨테이너 2.45x2.45x6.0	62	개소		강*식	경기도 시흥시 **로 ***번길 ** ***동 ***호 (미*동,*****)		
			사무실	컨테이너 2.4x2.4x6.0	1	개소					
			사무실	컨테이너 3.0x2.4x6.0	2	개소					
			화장실	간이화장실 정화조 없음	1	개소					
			동력		1	식					
			외등		1	식					
			철계단		1	식					
			보안시스템		1	식					
			CCTV		1	식					
			우수관	600φ	1	식					
			출입문1		1	식					
			출입문2		1	식					
			사무집기		1	식					
			포장		1	식					
4	고잔동	372-7	출입문	EGI웬스 B=5.0H=2.0	10	m ²		신*덕	인천시 연수구 **로 **, **아파트 **동 ***호		
			웬스	EGI웬스 B=30.0H=3.0	90	m ²					
계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69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0.08.11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0. 07.27. ~ 2020. 08.10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2019- 0202415	레몬비 래미안자이점	김*균	석산로166,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상가2동 102호(간서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0.03.19	2020.08.11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0.08.10. 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0년 07월 27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2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25 (구월동)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0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25 (구월동)	20090706	인근에 위치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2007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예술로 12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25를 건 물번호로 부여	인천문화예 술회관 야외공연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48-1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신로 70 (수산동)	20091116	경신마을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2007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경신로 7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0을 건물 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55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덕골로 150 (수산동)	20091116	덕골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2007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덕골로 15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50을 건 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5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139번길 10-12 (논현동)	20110324	에코중앙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07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에코중앙로 139번길 10-1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0-12를 건물번호로 부여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775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775호선 외 2개 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년 07월 30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0번지 일원(십정5구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십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3. 사업규모

- 중로2-775호선 L=184(175)m, B=15m, A=2,835.2m²
- 중로3-686호선 L=424(85.8)m, B=12m, A=283.6m²
- 소로2-43호선 L=102(20)m, B=8m, A=114.7m²

※ (): 금회 시공 연장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십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994번길 49(십정동, 2층)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0.07.30. ~ 2023.02.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편 입 용 지 조 서

- 중로2-775호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1	간석동	610	공	1,501.8	326.1	공	남동구청				
2	간석동	610-1	대	894.3	129.6	엄○○ 외18	인천 남동구 석정로579번길 ○○○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근저장권	
3	간석동	610-2	대	933.3	133.8	이○○ 외19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국○○ 은행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근저장권	
4	간석동	610-3	도	201.5	32.1	공	인천광역시				
5	간석동	610-12	대	130.8	53.0	김○○	인천 남동구 구월로○○○	한국○○ 은행	서울 중구 청계천로○○○	근저장권	
6	간석동	610-13	대	138.3	70.2	장○○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4동 ○○	인천 남동 간석4동○○○	근저장권	
7	간석동	611-8	대	1,649.7	267.6	대지권	아파트				
8	간석동	612-4	대	776.7	165.6	최○○ 외1	서울 은평구 불광동○○○				
9	간석동	612-6	대	418.1	121.4	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	남동○○ 조합	인천 남동구 만수동 ○○○	근저장권	
10	간석동	613-4	도	3,605	18.8	공	인천광역시				
11	간석동	613-5	도	5,394.5	1517.1	공	인천광역시				

- 중로3-686호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1	간석동	613-4	도	3,605.0	283.6	공	인천광역시				

- 소로2-43호선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1	간석동	607-17	대	266.2	6.3	신○○	인천 남동 백범로○○○				
2	간석동	613-5	도	5,394.5	108.4	공	인천광역시	농업○○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근저당권	